



-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0. 10.



박 종 길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: 박종길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이 조례는 「환경교육진흥법」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전을 실천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는 목적과 정의, 책무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위원회의 자문,
-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각종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,
- 안 제9조에서는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
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-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0년 10월 6일부터 2020년 10월 16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,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 집행부는 상위법령과 충복기재 된 일부 조문에 대한 삭제 의견을 밝혔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

[박종길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0082066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일자: 2020. 10. 6.

발 의 자: 박종길, 김인호, 김귀화,
박왕규, 이신자, 안영란,
박재형, 조복희

1. 제정이유

○ 이 조례는 「환경교육진흥법」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전을 실천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(안 제4조 ~ 제5조)
- 라. 각종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(안 제6조~제8조)
- 마. 환경교육센터의 운영(안 제9조)
- 바. 재정지원 및 실비지급 등(안 제10조~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제정조례안: 붙임 참조
- 나. 관계법령: 「환경교육진흥법」 제2조
- 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라. 비용추계서: 비대상
 - 사유: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
 - 근거: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

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환경교육진흥법」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환경교육”이란 「환경교육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.
2. “학교환경교육”이란 「환경교육진흥법」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.
3. “사회환경교육”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.)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.

-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-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
 2.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

3.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

4.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

5.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의 자문)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」 제12조에 따른 대구달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6조(학교환경교육의 지원) 구청장이 유치원장 및 학교장 등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
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

3. 학교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
4.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

5.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

6.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

제7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
2. 공공기관,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

3.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

4.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

5.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

6.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8조(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)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,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 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환경교육센터의 운영)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·단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센터(이하 “환경교육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0조(재정지원)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·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실비지급 등)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관련 법령 】

□ 환경교육진흥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7.

12. 12., 2020. 5. 26.>

1. "환경교육"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·기능·태도·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.
2. "학교환경교육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·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.
 - 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유치원
 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- 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- 라.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및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
3. "사회환경교육"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.